

『구미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(시행 2018. 1. 1.)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,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, 상위 법령에 맞게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)
- 납세자보호관의 설치, 선발,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 ~ 제7조)
-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, 제9조)
-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 ~ 제19조)
-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0조 ~ 제23조)
- 권리보호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4조 ~ 제28조)
- 납세자권리현장 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9조, 제30조)
-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1조, 제32조)
- 그 밖에 권리보호 업무의 범위를 규정함(안 제33조 ~ 제3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,
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- 예산관련 : 기준인건비 범위 내 운영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 및 총무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, 세무상담,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, 납세자권리현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를 조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